



장애요인과 문제점

1. 돼지분뇨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



유재일 부부장
(축협중앙회 중소가축부)

제의 해결에는 문제의 동문이 추적이 때로는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돼지분뇨가 사회적, 경영적, 환경적 문제로 대두된 시기별 양돈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작농업과 양돈이 결부된 유축농업 시대엔 돼지의 분뇨는 매우 중요한 농업생산재(유기질비료)였으며,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까지가 이런 시대로 분류될 것으로 보며, 1971년 우리나라의 양돈농가 호수는 924천호이고, 사육두수는 1,247천두였다. 이 때와 같이 많은 가구에 의하여 몇 마리씩의 돼지가

사육되는 형태는 1970년대 말 까지 이어지나, 1980년대 초부터 사육가구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사육두수(총 사육두수, 가구당 사육두수)는 증가하기 시작한다.

1981년에는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관련 규제조항이 환경보전법에서 규정되어 공포되었다. 이 법이 입법되는 1980년의 우리나라 양돈농가구수는 502천호였고, 사육두수는 1,783천두로 1971년에 비하여 가구수는 54%, 사육두수는 143%로 감소와 증가를 하였다.

이 시점까지 통계로만 보면 돼지 분뇨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의 1차적 원인을 사육두수 증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규제법의 제정 동기로 보면 경종농업과 분리된 극소수의 전·기업양돈이 문제가 되었고 규제

대상도 돈사면적 1,400m² 이상 양돈장이었다.

이후 폐기물관리법에서(86년) 더 많은 농가(돈사면적 500m² 이상)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었고, 한때 수질보전법으로 규제 조항이 옮겨지기도 한다.

1990년엔 양돈농가수가 133천호로 감소하고 사육두수는 4,528천두로 증가하여 1991년에는 지구상에서 같은 명칭을 찾 아볼 수 없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1991년 3월 8일)되고, 이때부터 가축이 배설한 모든 분뇨는 이 법 제2조 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폐수가 된다.

여기까지의 규제강화 입법과정으로 볼 때, 법의 강화 동기를 축산업자가 제공한 것으로 봄 달리 분석할 수 없다.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다면 축산업자 스스로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만들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3년 12월 28일 개정된 법이 공포되었고 개정법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으며, '94년 6월 상순 현재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다. 1981년 법에 의한 규제 이후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는 정화처리(淨化處理)란 법적 용어의 방식에

의하여만 하도록 되어 왔다.

정화처리 방법으로 축산폐수를 처리, 환경오염(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엔 정부의 지원 금액만도 1천억 원이 넘고 있으며('90~'93년), 농가가 자담한 금액을 더 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우리보다 훨씬 먼저 환경보전 관련법을 제정·운영하고 가축 분뇨를 다스려온 나라들에서는 앞의 주장이(토양환경) 환경보전방법의 진리이며 정설로 증명되어 있다. 미국의 가축분뇨 관련 규정에서는 가축분뇨를 축산폐수가 아닌 재활용 자연 자원(Natural resource)으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양사상에서 결자해지(結者解之)란 경구가 있듯이, 가축분뇨에 관한 문제도 분뇨를 축산폐수로 만든 사람들이 풀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는 제도 입안자, 제도의 운영자, 연구자, 지도자, 그리고 경종 농가의 절대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66

세계에서 가축분뇨를 폐수로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을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폐수로 볼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

99

평가한 정화처리시설의 환경보전(수질오염방지) 기여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 자타(농가, 농가 이외의 자)가 인정하는 실정이다.

1993년에 이르러서야 가축배설물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는 토양환경이 가장 순리적이며, 완벽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2. 가축분뇨의 자원화 장애요소와 관련 각 분야 가 해야 할 일

최근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논의가 각계(생산자 단체,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속히 논의가 구체화되고, 자원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자원화 제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환경보전의 최일선 행위자인 양축농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축의 분뇨가 축산폐수로 전락되도록 한 데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축산인에게는 자연환경의 인간과의 관계와 퇴비의 가치관을 잠시라도 망각(또는 상실한)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도 깊이 생각하여 보기로 권한다. 올바른 가치관을 상실한 정신에서 진정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가치관을 상실하면 처리의 대상(분뇨)을 대하는 자세가 기피적(忌避的)일 수밖에 없다. 기피적인 자세로 분뇨를 다스리는 한("예" 불완전한 정화처리 방류) 환경을 보전할 수도 없고, 축산경영도 잘 될 수 없다. 자원화만이 환경보전의 유일한 길이요, 축산경영도 발전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분뇨관리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경종 농가는 고품질의 유기질 비료를 원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잘 처리된 퇴비는 고가의 상품이 된다. 가축분뇨는 꼭 높은 소득원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규제 일변도의 제도는 자원화 촉진제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생김으로써 축산업은 곧 폐수를 연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쁜 표현은 국민의 정서에도 이롭지 못하다. 나쁜 말을 많이 쓰면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듯, 축산업이 국민 식생활의 태반을 뒷받침하는 산업임에도 국민의식 속에 혐오산업으로 나쁘게 오도되고 있다. 법 입안자는 이 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93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입법예고시 이 법의 가축배설물 전부를 축산폐수로 정의한는데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자원적 성격의 규정과 환경오염적 성격의 것을 구분하여 정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의견은 법의 개정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현행법('93년 개정된 법도 마찬 가지임)은 여러가지 모순을 지닐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모순된 법은 시행과정에 법 집행자와 시행자간에 마찰과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 법의 입안자들은 퇴비화 처리 농가에게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그러

하지 않은 경우가 수없이 나타남을 과거가 증명하고 있다. 어떻게 가축분뇨의 퇴비화처리가 폐수정화 방법중의 하나란 말인가! 정화처리는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중 아주 제한적으로 쓰여지는 하나일 뿐이다. 주종이 바뀌어도 이렇게 뒤바뀔 수도 없다. "악법도 지켜야 하는 것이 국민이고 법이라지만..." 이 법의 모순은 여러 조항에 있지만 하나만 더 지적하고자 한다.

이 법(모법)에서는 1회 퇴비 사용량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는 재활용신고(시장·군수에게)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경종농가)를 불필요하게 불편토록 하는 법이 이 시대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누차 지적하였듯이 이 법은 많은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 나쁜 제도, 잘못된 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은 입법자도 잘 알 것이다. 현행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보전에 기여보다는 오히려 환경보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과거와 현재의 우리 지적은 환경보전과 환경보전 행위자의 환경보전 행위를 돋고자 하는 데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밖혀 두는 바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아무리

보완하여도 기본법의 법 정신이 불합리한 것까지를 바로 잡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보전에 근원적으로 기여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전면 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셋째, 가축분뇨 자원화는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가축분뇨는 축산업의 3대 물류(物類) 중 하나이다. 축산업이 영위되는 과정에는 가축의 섭취물(사료, 물, 공기), 축산물, 배설물의 세 부류 물질이 계속 투입, 순환되며 생산이 지속된다. 과거 우리나라 축산업은 섭취물과 축산물에만 치우쳐 집착하여 왔다. 배설물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였으며, 따라서 연구도, 지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았다. 축산업에서 3대물질이면 연구도, 지도도, 투자도 3대물질에 걸맞게 하여야 할 것이다. 배설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서는 축산선진국도 될 수 없고, 무역자 유화에 대한 대처도 지난할 것임을 확인한다.

국가나 관련기관은 배설물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도에 적극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의 제공없는 투자(지원)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 투자는 곧 농

가의 손실로 연계될 수 밖에 없다. 투자와 기술이 함께 지원될 때 비로소 가축배설물에 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농가의 손실은 곧 축산업의 손실이고 축산업의 손실은 국가의 손실이다. 최일선 환경보전 행위자인 농가가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되어야 하겠다. 가축분뇨의 처리는 가치성, 취급성, 경제성, 환경보전성의 네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경종농가를 지원하는 제도 및 체계가 개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농가의 자원화 의지와 행위만으로 가축분뇨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생성된 유기질 비료가 경종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때 비로소 유기질비료는 소임(가치)을 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축분뇨의 자원화는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유기질비료는 품질의 균질화와 보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활한 유통이 되도록 하는 제도와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더 실행 예를 들어보면, 분뇨의 액비화는 가치 보전과 취급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다만, 사용시기의 제한

성과 장거리 유통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분뇨의 생산자인 양축농가 또는 처리사업자에게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양축농가와 처리사업자의 저작(보관)시설 용량이 매우 커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퇴비의 순환측면에서 볼 때, 퇴비는 땅에 투입되어야 하고, 땅에 대한 투입은 농가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액비의 보관시설은 농장에 있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액비조가 포장내에 있으면 농가는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자유롭게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분뇨 생산농가는 주기적으로 운반하여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됨으로써 액비의 사용시기에 제한성과 일시 집중, 이동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액비조의 총 용적(양축농가+경종농가)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다. ■

